

중장년층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남 국 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2025. 1.

중장년층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남 국 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요약	1
1. 논의 배경	3
2. 현황	4
(1) 중장년층의 취업현황	4
(2) 중장년층의 고용환경	15
3. 정책평가	22
(1) 추진정책	22
(2) 문제점	25
4. 정책대안	30
■ 참고문헌	38

요 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중장년층의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중장년 고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취업 지원 등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장년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23년 중년층의 인구는 769만명으로 '13년 대비 67만명 감소하였고, 중장년층의 인구감소는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짐
 - 장년층의 인구는 '23년 859만명으로 '13년 대비 80만명 증가하였지만, '33년에는 797만으로 62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장년일자리 예산은 '23년 2조 8,714억원에서 '24년 2조 813억원으로 7,891억원 (27.5%) 감소
 - 정부는 중장년층의 이직 및 전직 취업지원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의 고용은 불안정함
- 연구목적은 중장년층의 취업현황과 고용환경을 조사하고, 정부의 중장년 고용정책을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
 - 산업별, 직업별 취업현황과 고용형태별 임금, 근속년수, 근로시간 등의 고용환경을 조사하여 중장년 고용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 정부의 중장년 고용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적 정책방안을 제시

■ 중장년층의 취업현황 및 고용환경

- 중년층(40대) 취업자수는 '23년 626만명으로 '13년 대비 51만명 감소하여 산업별, 직업별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됨
 - 장년층(50대) 취업자수는 '23년 668만명으로 '13년 대비 97만명 증가하였지만, '33년에는 인구감소에 따라 취업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장년층 산업별 취업자수는 최근 10년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각각 282(천명), 217(천명) 감소하여 저숙련 업종에서 인력 부족
 - 중장년층 직업별 취업자수는 최근 10년간 장치기계조립종사자와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가 각각 265(천명), 167(천명) 감소하여 장치기계·기능업 종사자의 인력 부족

■ 정부의 중장년 고용정책 평가

○ 정부의 추진정책

- (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의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지원, 특화서비스 등 종합 고용 지원서비스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재취업 촉진 도모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일자리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정부 정책의 문제점

- 일자리창출, 소득지원, 직업훈련 등 중장년 일자리사업의 예산감소
-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에서 중장년 고용정책의 부재
- 중장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정책 부재
-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등 남녀고용차별 심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 문제

■ 정책제언

○ 취업지원, 소득지원, 직업훈련 등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의 예산확대

-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은 예산감소로 사업이 위축되었고, 다시 확대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장년층 재취업 활성화 필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및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해소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 장년구직자를 위한 구직상담 및 재취업연계 직업훈련 제공

- 고용센터를 통해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한 장년구직자의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구직상담 프로그램 제공

○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인력수급 조절 방안 마련

- 고학력 및 숙련인력이 증가한 반면, 저숙련 업종의 산업인력은 감소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경력단절 청년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제공**

- 가족친화인증의 인센티브로 여성일자리의 질 향상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확대

○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확대 및 법률안 제정**

-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법률안 제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기업은 제재 규정(이행강제금 부과) 도입

중장년층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남 국 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1 논의 배경

- 중장년층*는 생산성이 높은 계층으로 향후 중장년층의 인구감소로 산업현장의 숙련인력이 부족해져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중장년층의 인구는 1,659만명으로 2013년 비해 12만명 증가하였지만, 2033년에는 1,483만명으로 176만명(-10.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년층(40대) 인구는 2023년 799만명에서 2033년 686만명으로 113만(-14.2%) 감소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장년층(50대) 인구는 2023년 859만명에서 2033년 797만으로 62만명(-7.2%) 감소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 3,417만명, 2050년 2,445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
 - * 중년은 40-49세, 장년은 50-59세로 정의함
- 중년층 취업자수는 2023년 626만명으로 2013년 대비 51만명 감소하여 산업별, 직업별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됨
 - 장년층 취업자수는 2023년 668만명으로 십년전 대비 97만명 증가하였지만, 2033년에는 취업자수가 3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에 대비한 인력수급 계획 필요
 - 중장년층 산업별 취업자수에서 최근 10년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각각 282(천명), 217(천명) 감소하여 저숙련의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함
 - 중장년층 직업별 취업자수에서 최근 10년간 장치기계조립종사자와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가 각각 265(천명), 167(천명) 감소하여 장치기계·기능업 종사자의 인력이 부족함

○ 중장년층 고용환경은 임금차별, 근속기간의 차이 등 비정규직과 여성에게 불리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함

- 2023년 중장년층의 월 임금총액은 정규직 4,455천원, 비정규직 2,748천원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61.7% 수준임
- 중장년층의 고용형태별 근속년수는 정규직 13년, 비정규직 3년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이 매우 높은 수준임
-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연령이 더 빨라서 경력년수가 더 낮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중장년층의 경력년수는 1년 미만이 남자 6.9%에 여자 13.8%로 더 높고, 10년 이상은 남자 66.3%에 비해 여자가 41.9%로 더 낮게 조사됨
- 여자 정규직의 임금은 남자의 정규직 대비 72.1%이며, 여자의 비정규직은 여자의 정규직 대비 64.4% 수준으로 비정규직 여자의 임금은 남자와 여자의 정규직에 대비해 이중 차별을 받음

○ 정부는 최근 중장년 고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장년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장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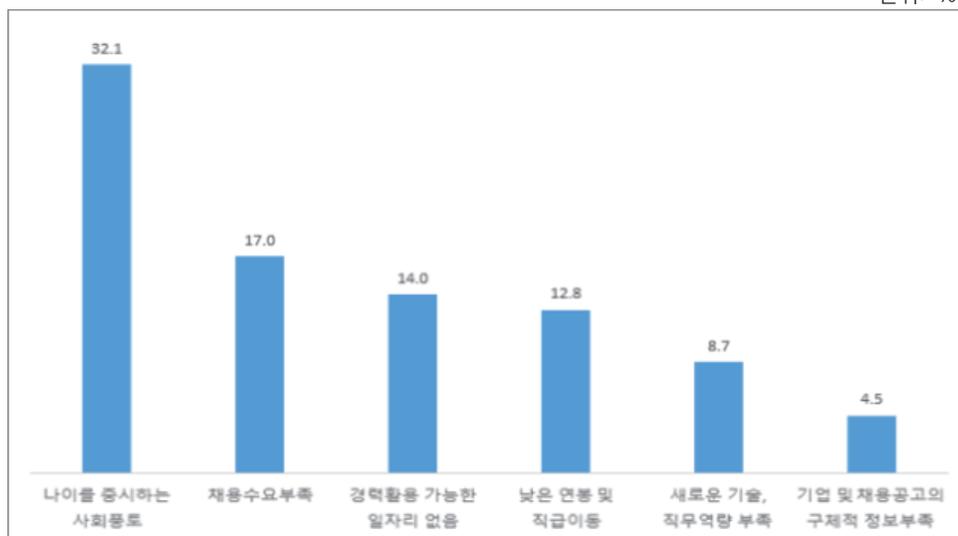
- 일자리창출, 소득지원, 직업훈련 등 중장년 일자리사업의 예산 감소로 중장년 고용지원이 감소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부정적 영향
- 중장년 관련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예산은 2023년 2조 8,714억원에서 2024년 2조 823억원으로 27.5% 감소
-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에서 중장년 고용정책의 부재
- 중장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정책 부재
-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등 남녀고용차별 심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 문제

○ 중장년 구직자 대상으로 구직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과 재취업시 가장 우선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2023)

- 중장년 구직자가 구직활동 시 어려운 점으로는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풍토(32.1%) ▲채용 수요부족(17.0%) ▲경력활용 가능한 일자리 없음(14.0%) 순으로 조사
- 재취업시 가장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임금수준(17.9%) ▲직무내용(17.0%) ▲출퇴근거리(14.0%) 순으로 조사

〈 구직활동시 어려운 점 〉

단위: %



자료: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취업현황과 고용환경을 조사하고, 정부의 중장년 고용정책을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
 - 중장년층의 취업현황과 고용환경을 조사하여 중장년 고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중장년 고용정책 평가 및 시사점 도출
 - 산업별, 직업별 취업현황과 고용형태별 임금, 근속년수, 근로시간 등의 고용환경을 조사하여 중장년 고용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 정부의 중장년 고용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적 정책 방안을 제시

2 현황

(1) 중장년층의 취업현황

- 2023년 중년층(40대)의 인구는 796만명으로 2013년 대비 67만명 감소(-7.8%)하였고,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는 52만 7천명 감소
 - 취업자수는 2013년 677만명에서 2023년 626만명으로 7.5% 감소
 - 취업자수 증가율¹⁾(-7.5%)은 인구변화율 -7.8%,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율 0.1%, 취업자 비율 변화율 0.1%로 구성됨
- 중년층은 인구분포의 중심부분에 해당하며 생산성이 높은 계층으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짐

〈중년층 주요 경제활동 지표 현황〉

단위: 천명, %, 전년대비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인구 (증감)	8,633 (20)	8,709 (-12)	8,541 (-80)	8,301 (-137)	8,164 (-70)	7,963 (-121)
경제활동인구 (증감)	6,908 (19)	7,054 (0)	6,931 (-50)	6,656 (-178)	6,463 (-47)	6,381 (-61)
취업자 (증감)	6,771 (23)	6,892 (-4)	6,783 (-49)	6,504 (-162)	6,311 (-35)	6,260 (-54)
실업자 (증감)	136 (-5)	163 (5)	148 (-1)	153 (-15)	152 (-12)	121 (-8)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1,725 (1)	1,655 (-12)	1,611 (-29)	1,644 (40)	1,701 (-23)	1,582 (-60)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80.0 (0.0)	81.0 (0.1)	81.1 (0.1)	80.2 (-0.8)	79.2 (0.1)	80.1 (0.4)
실업률 (증감)	2.0 (0.0)	2.3 (0.1)	2.1 (0.0)	2.3 (-0.2)	2.4 (-0.1)	1.9 (-0.1)
고용률 (증감)	78.4 (0.1)	79.1 (0.0)	79.4 (0.1)	78.4 (-0.6)	77.3 (0.2)	78.6 (0.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1) 고용변화 요인분해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이 모형은 인구요인, 경제활동 참가요인, 취업률 요인으로 분해하여 고용변화 원인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임(황광훈 외, 2023)

- 2023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명으로 2013년에 비해 14만 3천명 감소(-8.3%)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80.1%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실업자수는 2013년 13만 6천명에서 2023년 12만 천명으로 11% 감소하였고, 2023년 실업률은 1.9%로 낮은 수준임

○ 2023년 장년층(50대)의 인구는 859만명으로 2013년 대비 80만명 증가(10.3%)하였고,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는 98만명 증가

- 취업자수는 2013년 570만에서 2023년 668만으로 17.1% 증가
- 취업자수 증가율(17.1%)은 인구변화율 10.3%,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율 6.0%, 취업자비율 변화율 0.2%로 구성됨

○ 2차 베이비붐(1964~73년) 세대에 해당하는 장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청장년 인력부족을 대체하고 있지만, 향후 저출산 여파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80만명으로 2013년에 비해 18만명 감소(-9.2%)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79.1%로 4.5%p 증가
- 고용률은 2013년 73.2%에서 2023년 77.7%로 4.5%p 증가하였고, 2023년 실업률은 1.7%로 낮은 수준임

<장년층 주요 경제활동 지표 현황>

단위: 천명, %, 전년대비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인구 (증감)	7,794 (299)	8,158 (148)	8,368 (93)	8,541 (99)	8,550 (-3)	8,593 (12)
경제활동인구 (증감)	5,812 (280)	6,215 (132)	6,442 (147)	6,612 (102)	6,592 (44)	6,793 (61)
취업자 (증감)	5,704 (288)	6,068 (121)	6,302 (152)	6,444 (98)	6,422 (66)	6,678 (60)
실업자 (증감)	108 (-9)	147 (11)	140 (-5)	169 (5)	170 (-21)	116 (3)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1,982 (19)	1,943 (16)	1,927 (-53)	1,929 (-4)	1,958 (-47)	1,800 (-50)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74.6 (0.8)	76.2 (0.3)	77.0 (0.9)	77.4 (0.3)	77.1 (0.5)	79.1 (0.7)
실업률 (증감)	1.9 (-0.2)	2.4 (0.2)	2.2 (-0.1)	2.5 (0.0)	2.6 (-0.3)	1.7 (0.0)
고용률 (증감)	73.2 (0.9)	74.4 (0.2)	75.3 (1.0)	75.4 (0.2)	75.1 (0.8)	77.7 (0.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중년층 취업자수는 '13년과 '23년 사이에 521(천명) 감소, 산업별로 도·소매업 300(천명), 숙박·음식점업 139(천명), 건설업 107(천명) 순으로 감소,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27(천명), 정보통신업 121(천명) 증가
 - 남자는 352(천명) 감소, 도·소매업 167(천명), 건설업 145(천명), 금융보험업 56(천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 51(천명) 순으로 감소
 - 정보통신업 69(천명), 제조업 45(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42(천명), 숙박·음식점업 21(천명) 순으로 증가
 - 여자는 169(천명) 감소, 숙박·음식점업 160(천명), 도·소매업 134(천명), 제조업 111(천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 47(천명) 순으로 감소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29(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81(천명), 건설업 38(천명), 교육서비스업 14(천명) 순으로 증가
 - 중년층의 취업자수가 감소하여 5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취업자수 증가와 외국인력의 도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임
 - 도·소매업 등 저숙련 업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공공부문 및 기술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중년층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 위	산업분류	취업자수(13년)		계	취업자수(23년)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제조업	817	423	1,240(18.3)	862	312	1,174(18.8)
2	도·소매업	586	489	1,074(15.8)	419	355	774(12.4)
3	교육서비스업	166	380	547(8.1)	151	394	545(8.7)
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82	312	394(5.8)	80	441	521(8.3)
5	건설업	560	37	597(8.8)	415	75	490(7.8)
6	숙박·음식점업	149	359	508(7.5)	170	199	369(5.9)
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25	42	267(3.9)	241	123	364(5.8)
8	운수·창고업	359	37	396(5.8)	321	36	357(5.7)
9	정보통신업	153	24	177(2.6)	222	76	298(4.8)
1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215	92	308(4.5)	166	105	271(4.3)
1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118	116	234(3.5)	160	106	266(4.3)
12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	185	145	331(4.9)	134	98	232(3.7)
13	금융보험업	152	125	277(4.1)	96	133	229(3.7)
14	농업·임업·어업	92	54	146(2.2)	80	38	118(1.9)
15	부동산업	62	62	124(1.8)	40	47	87(1.4)
16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45	38	83(1.2)	47	40	86(1.4)
	합계	4,017	2,760	6,777	3,665	2,591	6,25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주: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더불어 취업자로 간주, 비임금근로자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

- 장년층 취업자수는 '13년과 '23년 사이에 964(천명) 증가,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358(천명), 건설업 181(천명), 제조업 177(천명), 교육서비스업 158(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24(천명) 순으로 증가
- 남자는 374(천명) 증가, 제조업 132(천명), 건설업 128(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87(천명), 정보통신업 45(천명) 순으로 많이 증가
 - 운수·창고업 93(천명), 농업·임업·어업 64(천명), 도·소매업 55(천명) 순으로 감소
 - 여자는 590(천명) 증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324(천명), 교육서비스업 150(천명), 도·소매업 74(천명) 순으로 많이 증가
 - 숙박·음식점업 98(천명), 농업·임업·어업 86(천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 51(천명) 순으로 감소

〈장년층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 위	산업분류	취업자수(13년)		계	취업자수(23년)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제조업	613	303	916(15.9)	745	348	1,093(16.3)
2	도·소매업	402	356	759(13.2)	347	430	777(11.6)
3	건설업	507	29	536(9.3)	635	82	717(10.7)
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42	209	250(4.4)	75	533	608(9.1)
5	숙박·음식점업	133	448	582(10.1)	154	350	504(7.5)
6	교육서비스업	147	148	296(5.2)	155	298	454(6.8)
7	운수·창고업	469	35	504(8.8)	376	42	418(6.2)
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148	130	278(4.8)	183	157	340(5.1)
9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	171	188	359(6.2)	170	137	307(4.6)
1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70	64	234(4.1)	189	110	300(4.5)
11	농업·임업·어업	223	189	413(7.2)	159	103	262(3.9)
1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94	12	106(1.8)	181	49	230(3.4)
13	금융보험업	63	78	142(2.5)	102	117	219(3.3)
14	부동산업	76	42	118(2.1)	82	65	147(2.2)
15	정보통신업	55	9	64(1.1)	100	25	125(1.9)
16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36	21	57(1.0)	54	61	115(1.7)
	합계	3,402	2,344	5,746	3,776	2,934	6,71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중장년층 산업별 취업자수에서 최근 10년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각각 282(천명), 217(천명) 감소하였고, 감소한 인력을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로 충원함

-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는 최근 10년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수가 각각 160(천명), 247(천명) 증가함(남국현, 2024)

- 중년층의 직업별 취업자수는 '13년과 '23년 사이에 판매종사자 353(천명),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223(천명),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206(천명), 서비스종사자 126(천명), 단순노무종사자 122(천명) 순으로 감소
 - 전문가·관련종사자 319(천명), 사무종사자 243(천명) 순으로 증가
 - 남자는 판매종사자 155(천명),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및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45(천명), 관리자 42(천명) 순으로 많이 감소
 - 전문가·관련종사자 108(천명), 서비스종사자 54(천명) 순으로 증가
 - 여자는 판매종사자 199(천명), 서비스종사자 179(천명), 단순노무종사자 131(천명) 순으로 많이 감소
 - 사무종사자 275(천명), 전문가·관련종사자 211(천명) 순으로 증가

〈중년층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위	산업분류	취업자수(13년)		계	취업자수(23년)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전문가·관련종사자	808	602	1,410(20.8)	916	813	1,729(27.6)
2	사무종사자	708	476	1,184(17.5)	676	751	1,427(22.8)
3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743	151	894(13.2)	598	73	671(10.7)
4	판매종사자	445	487	931(13.7)	290	288	578(9.2)
5	서비스종사자	197	502	700(10.3)	251	323	574(9.2)
6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627	107	734(10.8)	482	47	528(8.4)
7	단순노무종사자	277	365	642(9.5)	287	234	520(8.3)
8	관리자	126	18	145(2.1)	84	33	116(1.9)
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7	50	137(2.0)	81	30	112(1.8)
	합계	4,017	2,760	6,777	3,665	2,591	6,25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장년층의 직업별 취업자수는 '13년과 '23년 사이에 전문가·관련종사자 529(천명), 사무종사자 456(천명), 서비스종사자 137(천명), 관리자 48(천명) 순으로 많이 증가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39(천명), 단순노무종사자 47(천명),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42(천명) 순으로 감소

- 남자는 전문가·관련종사자 210(천명), 사무종사자 177(천명),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82(천명), 서비스종사자 55(천명) 순으로 많이 증가
 -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74(천명), 판매종사자 69(천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천명) 순으로 감소
- 여자는 전문가·관련종사자 320(천명), 사무종사자 280(천명), 서비스종사자 82(천명), 판매종사자 54(천명) 순으로 많이 증가
 - 단순노무종사자 79(천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8(천명),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44(천명) 순으로 감소
- 중장년층 직업별 취업자수에서 최근 10년간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와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가 각각 265(천명), 167(천명) 감소하였고, 감소한 인력을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로 충원함
 -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는 최근 10년간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와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가 각각 420(천명), 329(천명) 증가(남국현, 2024)

〈장년층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위	산업분류	취업자수(13년)		계	취업자수(23년)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전문가·관련종사자	436	200	636(11.1)	646	520	1,165(17.4)
2	사무종사자	350	177	528(9.2)	527	457	984(14.7)
3	서비스종사자	173	598	771(13.4)	228	680	908(13.5)
4	단순노무종사자	365	562	927(16.1)	397	483	880(13.1)
5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815	99	914(15.9)	741	131	872(13.0)
6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561	121	681(11.9)	643	77	720(10.7)
7	판매종사자	334	394	728(12.7)	265	448	713(10.6)
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7	176	393(6.8)	156	98	254(3.8)
9	관리자	149	18	167(2.9)	173	42	215(3.2)
	합계	3,402	2,344	5,746	3,776	2,934	6,71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중년층의 기업규모별 취업자수는 '13년과 '23년 사이에 1~4명 613(천명), 5~9명 122(천명), 30~99명 26(천명) 순으로 많이 감소, 300명 이상 232(천명), 100~299명 9(천명) 증가
 - 남자는 1~4명 265(천명), 5~9명 107(천명), 10~29명 44(천명), 30~99명 25(천명) 순으로 많이 감소, 300명 이상 91(천명) 증가

- 여자는 1~4명 347(천명), 5~9명 16(천명) 순으로 감소, 300명 이상 140(천명), 10~29명 43(천명) 순으로 증가
- 최근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중장년 취업자수가 증가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우선 대규모 기업에서 중장년 인력이 충원됨
- 9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지난 십년간 중장년 취업자수가 감소되어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음

〈중년층 기업규모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위	기업규모	취업자수(13년)		계	취업자수(23년)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1~4명	1,357	1,160	2,517(37.1)	1,092	813	1,904(30.4)
2	5~9명	561	402	963(14.2)	454	386	841(13.4)
3	10~29명	650	466	1,116(16.5)	606	509	1,114(17.8)
4	30~99명	579	474	1,053(15.5)	554	472	1,027(16.4)
5	100~299명	359	151	510(7.5)	356	163	519(8.3)
6	300명 이상	512	107	618(9.1)	603	247	850(13.6)
	합계	4,017	2,760	6,777	3,665	2,591	6,25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장년층의 기업규모별 취업자수는 '13년과 '23년 사이에 10~29명 374(천명), 300명 이상 305(천명), 30~99명 266(천명), 5~9명 197(천명), 100~299명 158(천명) 순으로 많이 증가, 1~4명 335(천명) 감소
- 남자는 300명 이상 195(천명), 10~29명 147(천명), 5~9명 102(천명), 30~99명 74(천명) 순으로 많이 증가, 1~4명 184(천명) 감소
- 여자는 10~29명 227(천명), 30~99명 192(천명), 100~299명 120(천명), 300명 이상 108(천명) 순으로 증가, 1~4명 151(천명) 감소

〈장년층 기업규모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 위	기업규모	취업자수(13년)		계	취업자수(23년)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1~4명	1,562	1,263	2,825(49.2)	1,378	1,112	2,490(37.1)
2	5~9명	414	302	716(12.5)	516	397	913(13.6)
3	10~29명	508	319	827(14.4)	655	546	1,201(17.9)
4	30~99명	407	309	717(12.5)	481	501	983(14.6)
5	100~299명	237	85	322(5.6)	275	205	480(7.2)
6	300명 이상	274	65	338(5.9)	469	173	643(9.6)
	합계	3,402	2,344	5,746	3,776	2,934	6,71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지난 10년간 중년층의 인력 감소에 장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함
- 장년층 인력은 1-4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에 고르게 충원되고 있음

○ 중년층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는 '13년과 '23년 사이에 임시근로자 558(천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4(천명), 일용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182(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2(천명) 순으로 많이 감소, 상용근로자 776(천명) 증가

- 남자는 임시근로자 182(천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9(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49(천명) 순으로 감소, 상용근로자 243(천명) 증가
- 여자는 임시근로자 377(천명), 무급가족종사자 187(천명), 일용근로자 71(천명) 순으로 감소, 상용근로자 543(천명) 증가
- 지난 십년간 중년층의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16.6%p로 증가하고,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여 중장년층 고용사정이 개선되었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규모가 모두 감소하여 매출감소로 폐업하는 자영업이 증가하는 상황임
- 여자는 상용직 비율이 2013년 39.8%에서 2023년 63.0%로 크게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임시직 비율이 29.3%에서 16.6%로 감소하여 고용사정이 개선됨

〈중년층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위	종사상지위	취업자수(13년)		계	취업자수(23년)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상용근로자	2,291	1,099	3,391(50.0)	2,534	1,633	4,167(66.6)
2	임시근로자	406	808	1,214(17.9)	224	431	656(10.5)
3	일용근로자	216	119	335(4.9)	105	48	153(2.4)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28	140	567(8.4)	269	94	363(5.8)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56	301	958(14.1)	507	278	786(12.6)
6	무급가족종사자	20	293	313(4.6)	25	106	131(2.1)
	합계	4,017	2,760	6,777	3,665	2,591	6,25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장년층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는 '13년과 '23년 사이에 상용근로자만 1,696(천명) 증가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2(천명), 일용근로자 189(천명), 무급가족종사자 159(천명), 임시근로자 152(천명) 감소
 - 남자는 상용근로자만 748(천명) 증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2(천명), 일용근로자 75(천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0(천명) 순으로 감소
 - 여자는 상용근로자 948(천명) 증가, 무급가족종사자 148(천명), 임시근로자 116(천명), 일용근로자 114(천명) 순으로 감소
 - 지난 십년간 장년층의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20%p로 크게 증가하고,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여 중장년층 고용사정이 개선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수가 감소하여 매출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필요
 - 남자와 여자의 상용직 비율이 지난 십년간 각각 15.6%p, 26.7%p로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의 인력난 심화에 중장년층 상용직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고용사정이 개선됨

〈장년층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 위	종사상지위	취업자수(13년)		계	취업자수(23년)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상용근로자	1,448	656	2,104(36.6)	2,196	1,604	3,800(56.6)
2	임시근로자	310	666	975(17.0)	273	550	823(12.3)
3	일용근로자	281	179	460(8.0)	206	65	271(4.0)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66	120	485(8.4)	316	139	454(6.8)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72	360	1,332(23.2)	770	361	1,130(16.8)
6	무급가족종사자	26	364	390(6.8)	15	216	231(3.4)
	합계	3,402	2,344	5,746	3,776	2,934	6,71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주: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더불어 취업자로 간주, 비임금근로자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

○ 중년층의 학력별 취업자수는 '13년과 '23년 사이에 고등학교 1,339(천명), 중등이하 324(천명) 순으로 감소, 대학교 595(천명), 전문대 456(천명), 석사이상 91(천명) 순으로 증가

- 남자는 고등학교 650(천명), 중등이하 129(천명), 석사이상 9(천명) 감소, 대학교 229(천명), 전문대 205(천명) 증가
- 여자는 고등학교 690(천명), 중등이하 195(천명) 감소, 대학교 367(천명), 전문대 251(천명), 석사이상 99(천명) 증가

〈중년층 학력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 위	학력구분	취업자수(13년)		계	취업자수(23년)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중등이하	176	220	396(5.8)	47	25	72(1.2)
2	고등학교	1,690	1,509	3,199(47.2)	1,040	819	1,860(29.7)
3	전문대	487	322	809(11.9)	692	573	1,265(20.2)
4	대학교	1,366	601	1,968(29.0)	1,595	968	2,563(41.0)
5	석사이상	298	107	405(6.0)	289	206	496(7.9)
	합계	4,017	2,760	6,777	3,665	2,591	6,25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중년층의 학력수준의 향상으로 대학교, 전문대의 취업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반면 고등학교와 중등이하의 취업자수는 감소함
 - 여자는 지난 십년간 대학교와 전문대의 취업자수는 각각 15.6%p, 10.4%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취업자수는 23.1%p 감소하여 여성취업자의 고숙련 및 전문인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장년층의 학력별 취업자수는 '13년과 '23년 사이에 중등이하만 1,380(천명) 감소, 대학교 958(천명), 고등학교 808(천명), 전문대 418(천명), 석사이상 160(천명) 순으로 증가
- 남자는 중등이하만 575(천명) 감소, 대학교 527(천명), 전문대 179(천명), 고등학교 153(천명) 감소, 석사이상 91(천명) 증가
 - 여자는 중등이하 805(천명) 감소, 고등학교 656(천명), 대학교 432(천명), 전문대 238(천명), 석사이상 70(천명) 증가
 - 장년층의 중등이하의 취업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고, 대학교와 고등학교, 전문대의 취업자수는 증가하여 노동시장에서 저학력 인력은 점차 사라지고, 고학력 및 전문인력으로 대체됨
 - 여자는 지난 십년간 대학교와 전문대의 취업자수는 각각 15.6%p, 10.4%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취업자수는 23.1%p 감소하여 여성취업자의 고숙련 및 전문인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장년층 학력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위	학력구분	취업자수(13년)		계	취업자수(23년)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중등이하	744	1,036	1,779(31.0)	169	231	399(5.9)
2	고등학교	1,534	943	2,478(43.1)	1,687	1,599	3,286(49.0)
3	전문대	233	97	330(5.7)	412	335	748(11.1)
4	대학교	723	215	938(16.3)	1,250	647	1,896(28.3)
5	석사이상	168	53	221(3.8)	259	123	381(5.7)
	합계	3,402	2,344	5,746	3,776	2,934	6,71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 중장년층의 고용환경

- 2023년 중년층(40대)의 고용형태별 고용비율은 정규직 78.7%, 비정규직 21.3%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7.6%, 단시간 근로자 5.8%, 특수형태 근로자 3.0%, 일일 근로자 2.5% 순으로 높음
 - 남자는 정규직 비율이 84.1%로 여자에 비해 15.8%p 더 높고, 여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1.7%로 높은 수준임
 - 여자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단시간 근로자가 12.1%로 가장 높고, 기간제 10.6%, 특수형태 근로자 5.2%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남자는 일일 근로자 3.0%, 용역 근로자 2.3%로 여성에 비해 높음
 - 장년층(50대)의 고용비율은 정규직 70.1%, 비정규직 29.9%로 40-49세 장년층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여 재취업한 사례가 증가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짐
 - 여자의 비정규직은 42.3%로 남자에 비해 19.8%p 더 높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단시간 근로자 16.6%, 기간제 근로자 10.4%, 용역 근로자 6.4%로 순으로 조사되었고,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더욱 증가함
 - 남자는 기간제 근로자 6.8%, 일일 근로자 6.3%, 용역 근로자 3.5% 순으로 높고, 남자의 일일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은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이 높은 데 기인함

〈중장년층의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단위: %

고용형태	40-49세		계	50-59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정규직	84.1	68.3	78.7	77.5	57.7	70.1
비정규직	15.9	31.7	21.3	22.5	42.3	29.9
기간제 근로자	6.0	10.6	7.6	6.8	10.4	8.2
단시간 근로자	2.5	12.1	5.8	3.2	16.6	8.2
일일 근로자	3.0	1.3	2.5	6.3	2.6	5.0
파견 근로자	0.3	0.8	0.4	0.2	0.7	0.4
용역 근로자	2.3	1.6	2.1	3.5	6.4	4.6
특수형태 근로자	1.8	5.2	3.0	2.4	5.2	3.4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2023년 중년층의 고용형태별 근속년수는 정규직 11.1년, 비정규직 2.7년이며, 두 계층 간 차이는 8.4년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이 매우 높은 수준임
 - 비정규직은 특수형태 근로자 4.1년, 용역 근로자 3.9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2.8년 순으로 근속년수가 높음
 - 남자와 여자의 비정규직 근속년수는 각각 2.7년, 2.8년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남자는 용역 근로자가 4.3년으로 가장 높고, 여자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4.3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장년층의 근속년수는 정규직 15.3년, 비정규직 3.1년이며, 두 계층 간 차이는 12.2년으로 40-49세 중장년층에 비해 정규직은 근속년수가 길어진 반면,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성이 높은 수준임
 - 장년층 남자의 정규직 근속년수는 17.5년으로 40-49세에 비해 6.1년 높아지고, 여자의 근속년수는 같은 것으로 조사되어 주된 직장에서 여성의 퇴직이 더 빠르고, 여성의 계속 고용에 차별이 존재
 - 여자는 특수형태 근로자 7.1년, 단시간 근로자 3.3년, 용역 근로자 3.0년 순으로 높고, 남자는 특수형태 근로자 5.2년, 기간제 근로자 4.2년, 용역근로자 3.9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장년층의 고용형태별 근속년수〉

단위: 년

고용형태	40-49세		계	50-59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정규직	11.4	10.3	11.1	17.5	10.3	15.3
비정규직	2.7	2.8	2.7	2.9	3.3	3.1
기간제 근로자	3.2	2.3	2.8	4.2	2.5	3.4
단시간 근로자	2.6	2.9	2.8	3.5	3.3	3.3
일일 근로자	0.0	0.0	0.0	0.0	0.0	0.0
파견 근로자	2.2	1.1	1.5	3.0	1.3	1.9
용역 근로자	4.3	2.7	3.9	3.9	3.0	3.4
특수형태 근로자	3.8	4.3	4.1	5.2	7.1	6.3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2023년 중년층의 경력년수는 10년 이상이 5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 14.6%, 1년 미만 8.7% 순으로 높음
 - 남자는 10년 이상이 64.2%로 여성의 45.6%에 비해 19%p 더 높고,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경력년수가 더 낮음
 - 여자는 2년 미만이 22.1%로 남자의 10.9%에 비해 11.2%p 더 높아 잦은 이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수준임
 - 장년층의 경력년수는 10년 이상이 57.6%로 중년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퇴직 근로자의 증가로 더이상 경력년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장년층의 경력년수가 1년 미만이 10.2%로 중년층에 비해 더 높고, 퇴직이후 이전 업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증가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
 - 여자는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가 38.6%로 40-49세인 여자에 비해 더 낮아졌고, 주된 일자리에서 여자의 퇴직이 더 빠른 결과임
 - 우리나라 퇴직자들의 연령은 평균 49.3세로 조사(통계청, 2023)

〈중장년층의 현재 업무의 총 경력년수〉

단위: %

경력년수	40-49세		계	50-59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년 미만	6.4	13.2	8.7	7.6	14.5	10.2
1년 이상~2년 미만	4.5	8.9	6.0	4.3	9.8	6.4
2년 이상~3년 미만	3.5	5.9	4.3	3.2	7.1	4.7
3년 이상~4년 미만	3.7	5.6	4.4	3.3	6.7	4.6
4년 이상~5년 미만	3.9	5.3	4.3	3.3	6.0	4.3
5년 이상~10년 미만	13.9	15.9	14.6	9.4	17.4	12.3
10년 이상	64.2	45.2	57.7	68.8	38.6	57.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주: 총 경력년수는 다른 사업체에서 종사한 동일업무의 경력년수가 모두 포함됨

- 2023년 중년층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정규직 176.4시간, 비정규직 128.5시간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은 용역 근로자 178.2 시간, 파견 근로자 171.7시간, 기간제 근로자 170.2시간 순으로 높음
 - 남자의 비정규직 총 실근로시간은 139.5시간으로 비정규직 여자에 비해 22.2시간 더 높고,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남자의 근로시간이 더 높음

- 남자의 용역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총 실근로시간은 각각 182.9시간, 182.2시간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도 더 길게 나타남
- 장년층의 총 실근로시간은 정규직 177.0시간, 비정규직 127.0시간으로 40-49세 장년층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남녀 모두 일일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여자는 장년층의 단시간 근로자의 총 실근로시간이 81.7시간으로 중년층 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12.2시간 더 길어져, 50세 이상 여성의 단시간 근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중장년층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

단위: 시간

고용형태	40-49세		계	50-59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정규직	178.7	170.9	176.4	178.8	172.7	177.0
비정규직	139.5	117.3	128.5	132.8	121.7	127.0
기간제 근로자	175.3	164.7	170.2	171.8	162.5	167.4
단시간 근로자	43.1	69.5	62.1	49.4	81.7	73.8
일일 근로자	109.6	86.5	105.4	102.2	87.4	99.3
파견 근로자	182.2	165.4	171.7	184.5	168.0	173.8
용역 근로자	182.9	165.3	178.2	184.1	168.0	175.8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주: 총 실근로시간=소정 실근로시간 + 초과 실근로시간

- 2023년 중년층의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은 정규직 4,385천원, 비정규직 2,873천원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65.5% 수준
 -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3,660천원, 용역 근로자 2,871천원, 파견 근로자 2,626천원, 단시간 근로자 1,392천원 순으로 높음
 - 남자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72.6% 수준이며, 파견 및 용역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3,363천원, 3,046천원으로 앞의 총 실근로시간에서 이들의 근로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더 긴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더 낮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함
 - 여자 정규직의 임금은 남자의 정규직 대비 78.3%이며, 여자의 비정규직은 여자의 정규직 대비 65.1% 수준으로 비정규직 여자의 임금은 남자와 여자의 정규직에 대비해 이중 차별을 받음
- 장년층의 월 임금총액은 정규직 4,526천원, 비정규직 2,650천원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8.6% 수준이며, 40-49세 장년층에 비해 남녀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주된 직장에서 여성이 더 빨리 퇴직한 것이 원인임

- 남자는 정규직 임금이 5,103천원으로 남자 비정규직과 여자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이 모두 감소한 것에 비해 홀로 증가하였고, 정규직 남자의 정년연령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여자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남자의 비정규직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에서 남녀 임금차이 해소에 대한 정책방안 필요

〈중장년층의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

단위: 천원

고용형태	40-49세		계	50-59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정규직	4,748	3,717	4,385	5,103	3,378	4,526
비정규직	3,446	2,418	2,873	3,293	2,196	2,650
기간제 근로자	4,365	3,127	3,660	4,371	2,684	3,434
단시간 근로자	1,343	1,408	1,392	1,388	1,395	1,394
일일 근로자	3,363	2,319	2,626	3,391	2,244	2,547
파견 근로자	3,046	2,410	2,871	2,880	2,300	2,576
용역 근로자	182.9	165.3	178.2	184.1	168.0	175.8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주: 월 임금총액= 정액급여액 + 초과급여액

- 2023년 중년층의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개인·가족관련 이유 29.1%,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9.6%, 작업여건 불만족 14.7%,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10.4% 순으로 조사
 - 여자는 이직사유가 개인, 가족관련 이유 30.9%, 가사 8.9%, 육아 5.9% 등 가족관련 사유가 45.7%로 나타남
 - 남자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20.1%, 작업여건 불만족 18%,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10.4% 등 근로관련 요인이 주요한 사유로 조사
- 장년층의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개인·가족관련 이유 35%,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13.9%,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11.3% 등의 사유가 40-49세에 비해 높아짐
 - 남자는 40-49세에 비해 작업여건 불만족 비율이 낮아지고, 심신장애가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비율이 높아짐

〈중장년층의 이전직장 이직사유〉

단위: %

이직사유	40-49세		계	50-59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개인, 가족관련 이유	25.2	30.9	29.1	30.7	37.8	35.0
육아	2.2	5.9	4.7	0.0	0.3	0.2
가사	0.0	8.9	6.1	0.0	5.3	3.2
심신장애	0.7	1.0	0.9	3.3	1.3	2.1
정년퇴직, 연로	0.0	0.0	0.0	1.2	0.5	0.8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18.0	13.2	14.7	7.0	8.0	7.6
직장의 휴업, 폐업	6.5	3.6	4.5	2.5	8.5	6.1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9.4	9.2	9.3	10.3	12.0	11.3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20.1	19.4	19.6	20.5	18.4	19.2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17.3	7.2	10.4	24.2	7.2	13.9
기타	0.7	0.7	0.7	0.4	0.8	0.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2023년 중년층의 4주내 비구직 사유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음 35.3%,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음 17.9%,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1.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남자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음 등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총 78.7%로 매우 높았고, 교육, 기술, 경험 부족은 7.8%로 낮음
 - 여자는 육아·가사가 20%, 교육, 기술, 경험 부족이 14.8%로 남자에 비해 높고, 일거리가 없음의 비율은 총 61.7%로 남자에 비해 다소 낮음
 - 장년층의 비구직 사유는 40-49세 중장년층에 비해 교육, 기술, 경험 부족이 4.1%로 낮아지고, 근처에 일거리가 없음 13.5% 등 일거리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함
 - 남자는 일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총 90.2%로 40-49세에 비해 더욱 증가하였고, 여자는 육아·가사의 응답비율이 감소함

〈중장년층의 4주내 비구직 사유〉

단위: %

이직사유	40-49세		계	50-59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7.8	7.8	7.8	10.6	3.8	6.9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6.9	33.9	35.3	33.6	37.9	35.9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0.7	7.0	8.7	13.3	13.6	13.5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7.8	14.8	11.5	1.8	6.1	4.1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1.0	0.0	0.5	2.7	3.0	2.9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23.3	13.0	17.9	32.7	19.7	25.7
육아	1.9	3.5	2.8	0.0	0.0	0.0
가사	0.0	16.5	8.7	0.0	8.3	4.5
통학	1.0	1.7	1.4	0.0	0.8	0.4
심신장애	1.9	0.0	0.9	0.0	0.0	0.0
기타	7.8	1.7	4.6	5.3	6.8	6.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3

정책평가

(1) 추진정책

- 정부는 최근 중장년 고용상황에 대응하여 40대 이상 중장년의 성공적인 이직과 전직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장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취업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함
 - 중장년내일센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고령자인재은행 등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급여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중장년내일센터
 -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재취업 촉진 도모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및 사업주
 - (지원내용) 중장년층의 생애경력설계, 전직·재취업 지원, 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산업별 특화서비스, 사업주 지원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 (생애경력설계)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재취업 활동 및 경력관리 지원
 - (전직·재취업 지원) 고용복지+센터(중장년전담창구) 및 중장년센터에서 중장년 유형에 따라 전직지원 및 재도약 프로그램 제공
 - (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지자체의 예산 대응지원 등을 통해 취업연계 프로그램, 직무교육, 직업훈련, 중장년 고용기업 지원금 지원 등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산업별 특화서비스) 지역별 주요 산업을 반영, 관련 산업별 협회 등과 함께 직업정보제공, 직무교육, 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공
 - (사업주 지원 패키지) 중장년 고용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 대상으로 ①고령자 계속고용·신규채용 컨설팅, ②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훈련 ③'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아업

-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미취업자(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
- (지원내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 보험 가입
 - (활동분야)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13개 분야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고령자인재은행

- 만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다양한 직종(일용, 상용직)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고령자, 구인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체
- (지원내용) 민간의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만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고용서비스 제공
 -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실시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사업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인턴연계, 취·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직무소양 교육, 구직 스킬 향상을 위한 취업준비 교육, 직업전문 교육 등 5~6개 직업훈련 과정 운영
 - (인턴연계)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제공과 취업 후 고용 유지 지원 (1인당 총액 380만원, 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80만원)

- (취·창업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 (경력단절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 (시행주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공동주관, 159개 새일센터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지원

- 민간기업·공공기관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남녀 고용평등 촉진('06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사업장*
 -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 (내용) 대상사업장의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규모별 (1,000인 이상, 미만), 산업별 30개 부문의 평균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과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 선정
- 각 부문 평균치의 70% 미만 사업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 사업주에 대하여는 매년도 명단 공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급여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2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주당 최초 5시간분)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문제점

- 정부는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직 및 전직 취업지원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중장년 일자리 사업예산은 삭감되어 중장년 고용지원이 어려워짐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등 일부 일경험 지원 예산만 증가되었고, 소득지원, 직업훈련 등 다른 중장년 일자리 예산은 대부분 삭감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예산: 2023년 2,922억원 → 2024년 3,116억원으로 194억원 증가
 - 중장년층의 취업자수 감소, 중장년 재취업, 남녀 고용차별 등 중장년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부재한 상황
 - 중장년 산업별 인력구조 변화, 이중노동시장 문제, 일자리 미스매칭 등 중장년 고용상황 변화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 부족한 상황

-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중장년 일자리사업의 예산 감소
 - 중장년 관련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예산은 '23년 2조 8,714억원에서 '24년 2조 823억원으로 7,891억원(27.5%) 감소
 - 중장년층 취업지원은 40대 이상 재직자와 구직자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223억원에서 '24년 201억원으로 10% 감소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예산은 '23년 257억원에서 '24년 127억원으로 50.8% 감소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은 50세 이상의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에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의 예산변화〉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중장년층 취업지원	22,281,000	20,052,00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25,696,000	12,654,00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2,030,000	11,668,000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480,000	1,790,000
고용창출장려금	139,504,000	48,277,000
고용유지지원금	197,374,000	71,372,000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5,984,000	2,269,000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47,504,000	106,292,000
취약계층 취업촉진	11,654,000	6,185,000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1,121,000	0
일터혁신지원	28,004,000	0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10,500,000	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44,521,000	125,000,000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887,312,000	734,204,000
국민취업지원제도	1,225,455,000	942,515,000
계	2,871,420,000	2,082,278,000

자료: 열린재정, 기획재정부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3%, 27.8% 감소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은 고용상 성차별 등 고용평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65.4%, 63.8%, 62.1% 대폭 삭감됨
 - 고용창출장려금은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규모의 축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과 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27.9%, 46.9% 감소함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은 지역의 고용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취약계층 취업지원은 노숙인, 건설임용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민간기관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
-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내일배움카드 등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훈련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
-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일터혁신지원,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00% 전부 삭감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과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13.5%, 17.2% 감소함

○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에서 중장년 고용정책의 부재

-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24.1.16)에서 중장년의 고용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중장년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 중장년층(40-49세)의 인구는 '23년 796만명으로 십년 전 대비 67만명이 감소하였고, 취업자수는 51만명이 감소한 상황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 간과
- 최근 10년간 중장년층(40-49세)의 산업별 취업자수가 도·소매 30만명, 숙박·음식점업 14만명 감소 등 인구감소로 산업별 인력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책마련 부재
-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대상별 맞춤형 취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 촉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청년, 고령자, 장애인 정책 마련에 그치고 중장년층을 배려하고 있지 않음
- (청년) 재학단계부터 맞춤형 지원 및 일경험 확대
- (고령자) 취약고령자 지원확대 및 계속고용 지원
-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 중장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정책 부재

- 중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340만명) 가운데 ‘쉬었음’ 중장년인구도 66만명이고, 취업 시험준비자는 7만 4천명이며, 이들에 대한 정책 필요
 -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은 육아·가사 73.1%, 쉬었음 18.3%, 취업준비 1.9% 등으로 중장년 고용정책 필요
- 중장년층의 4주내 비구직사유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음’ 등이 주요 사유로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정책 부재
 - ‘전공이나 경력, 교육, 기술 부족’으로 응답한 사례도 11%를 넘어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필요
- '23년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54만명에 달하고,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49만 6천명으로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일자리 미스매칭 발생(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23)
 - 사업체에서 구인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이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4.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9%) 순으로 조사

○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등 남녀고용차별 심화

- 여자 정규직의 임금은 남자의 정규직 대비 78.3%이며, 여자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65.1% 수준으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음
 - 여성의 경력년수가 10년 이상은 45.6%로 남성의 64.2%에 비해 19%p 더 낮아,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가 심각
-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
 - 한국 31.1%, 이스라엘 24.3%, 일본 22.1%, 라트비아 19.8% 순으로 임금격차가 큰 나라임
 - 한국의 임금격차는 OECD 평균 12.0%보다 높고, EU 국가 평균 10.3%보다 20.8%가 높음
- 우리나라의 여성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57.7%로 스웨덴 73.2%, 독일 72.2%, 미국 64.7%보다 낮고, OECD 평균 60.4%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
 - 남녀 고용률 격차는 17.5%로 스웨덴 4%, 프랑스 5%, 독일 7.1%에 비해 큰 수치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 문제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산업별·규모별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시정계획을 요구하는 제도로, 이 기준에 미달된 기업은 부담을 느낌
- 기업 측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직접적인 행정 비용 뿐만 아니라 이행 계획, 추가자료 제출 등 기업에 유·무형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인식
-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고임금을 받는 관리자 및 상위 직급 여성을 늘리기 보다는 저임금을 받는 여성 비중을 줄여 관리자 비율을 높이려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함
- 시행계획서 제출과 평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한정되어 있고, 미달 사업체 공표 외에 제재 방안이 없어 불성실한 신고와 부정확한 자료제출의 문제발생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페널티로서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도 도입(2017년부터 명단공표 시행)
- 여성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계획서 제출·평가 → 이행실적 평가 및 이행지도 → (미이행시) 명단 공표
-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저임금 업종과 직업에 취업할 수 밖에 없는 차별적인 고용구조 속에 놓여있고, 경력단절 이후 여성은 훈련된 저임금 노동력으로 고용됨
- 불평등한 고용 구조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사용되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차별적 고용 구조 개선이 필요

4

정책대안

- **중장년층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저숙련 업종과 장치기계 조립 기능원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중장년층의 고용환경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근속기간의 차이 등 고용조건이 악화되어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함
 - 정부는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의 예산 감소, 중장년층의 고용정책 부재, 남녀고용차별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취업현황과 고용환경 및 정부의 중장년층 고용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취업지원, 소득지원, 직업훈련 등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의 예산 확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및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해소
 - 장년구직자를 위한 구직상담 및 재취업연계 직업훈련 제공
 -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인력수급 조절 방안 마련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제공
 -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확대 및 법률안 제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법률안 제정
- **취업지원, 소득지원, 직업훈련 등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의 예산 확대**
 -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은 예산감소로 사업이 위축되었고, 다시 확대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장년층 재취업 활성화 필요
 - 중장년층 취업지원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10%, 50.8% 감소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3%, 27.8% 감소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가 심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확대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확대 필요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의 예산은 '24년 1,475억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412억이나 감소하여 지역 고용에 부정적 영향

-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등 직업훈련 관련된 사업예산을 다시 복원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예산확대로 중장년층의 구직활동 촉진과 취업지원서비스 및 직업교육 강화
-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일터혁신지원 등 직무교육 예산의 전면 삭감으로 현장 훈련과 직무교육, 취업지원이 위축됨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23%, 17% 감소하였고, 다시 확대하여 중장년층과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지원 취업서비스 확대 및 직무능력의 향상 필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및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미국 등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 원칙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별 해소에 적용
- 두 업무가 동일하거나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치가 인정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의 해소가 가능함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24.10.16., 김주영, 23.7.11.) 발의
 -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개선
 - 동일가치노동이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의 조건에서 동일한 수준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함
- 직무의 특성(난이도, 업무강도, 책임, 기술) 및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해소
 -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직무평가에 의해 임금수준 결정
 - 기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의 수준
 - 노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 담당자가 기울여야 하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수고의 정도, 피로도, 긴장감 등
 - 책임: 조직이 기대하는 성과 및 목표달성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영향력의 정도
 - 작업조건: 작업의 환경으로 인하여 직무수행 담당자가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는 정도

○ 장년구직자를 위한 구직상담 및 재취업연계 직업훈련 제공

- 고용센터를 통해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한 장년구직자의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 제공 등 구직상담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적성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구직자의 직업선택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및 수료 후 취업알선
- 일반기능, 숙련기술, 디지털 신기술 등 직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업훈련 제공
-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훈련장려금 등 전액 국가 지원
- 공공·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취업상담사의 취업관련 정보와 맞춤형 재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취업장려금, 직장적응상담) 제공

○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인력수급 조절 방안 마련

- '23년에서 '33년 사이에 생산가능인구(20-69세)가 2,699(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취업자수 감소는 130만명²⁾ 이상 될 것으로 예상
- 20-59세 생산가능인구는 3,494(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20-29세와 40-49세 인구가 각각 1,591(천명), 1,136(천명) 감소하여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60-69세 인구는 795(천명) 증가에 그쳐 20-59세 인구의 감소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13년에서 '23년 사이 인구와 취업자수 감소가 0.58 정도의 관계를 나타내어 대략 0.5의 수치로 계산함

〈생산가능인구³⁾(20-69세) 인구변화〉

단위: 천명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계
	남자	여자									
2013	3,529	3,157	4,140	3,896	4,395	4,258	3,910	3,912	2,104	2,254	35,554
2023	3,463	3,085	3,634	3,240	4,082	3,911	4,316	4,281	3,687	3,846	37,543
2033	2,590	2,367	3,579	3,150	3,599	3,258	4,042	3,933	4,123	4,205	34,844
2033-2023	-873	-718	-55	-90	-483	-653	-274	-348	436	359	-2,699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20-59세 취업자수는 '13년에서 '23년 사이에 산업별 도·소매업 547(천명) 등 1,294(천명)이 감소하였고, 향후 10년간은 더욱 인력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급수급 계획과 대책 마련 필요
-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등 저숙련 업종 중심으로 산업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고령자와 외국인 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10년 대규모 인력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함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공공 부문과 기술업 중심으로 고학력 및 숙련인력이 증가한 반면, 저숙련 산업의 인력은 감소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3) 65세 이상 고령층도 계속근로희망비율이 91.3%(경제활동인구조사, 2023)로 높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하여 조사

〈생산가능인구(20-59세)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위	산업분류	취업자수(13년)	취업자수(23년)	증감(증가율)
1	제조업	3,921	3,857	-64
2	도·소매업	3,205	2,658	-547
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1,429	2,015	586
4	숙박·음식점업	1,758	1,804	46
5	교육서비스업	1,731	1,707	-24
6	건설업	1,587	1,665	78
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967	1,228	261
8	운수·창고업	1,207	1,173	-34
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849	1,001	152
10	정보통신업	688	999	311
1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874	953	79
12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	1,112	879	-233
13	금융보험업	861	698	-163
14	농업·임업·어업	677	448	-229
15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357	446	89
합계		21,858	22,081	22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20-59세 취업자수는 직업별로 판매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기능원·관련 기능종사자 등 1,496(천명)이 감소하였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 기능직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기능인력 양성과 충원 방안 마련
- 전문가·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 고학력·전문직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와 농림어업 등 단순 노동 직종에 대한 취업 기피로 인력부족 심화되어 정부 지원과 인력 수급 방안 마련 필요

〈생산가능인구(20-59세) 직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순위	직업분류	취업자수(13년)	취업자수(23년)	증감(증가율)
1	전문가·관련종사자	4,864	5,750	886
2	사무종사자	4,130	4,610	480
3	서비스종사자	2,330	2,659	329
4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2,665	2,259	-406
5	단순노무종사자	2,143	2,103	-40
6	판매종사자	2,691	2,097	-594
7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2,045	1,798	-247
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35	426	-209
9	관리자	354	379	25
	합계	21,858	22,081	22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제공

- 가족친화인증의 인센티브로 실제 여성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법인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과 같은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인센티브 확대
 -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 공공기관 외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음
- 육아휴직 대체자 고용 시 지원금 확대, 업무대체자 지원금 제도 신설
 - 육아휴직의 경우에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
 - 대체인력 구인의 어려움으로 사내 업무대체자가 지정되는 경우 ‘업무대체자 지원금’ 지급제도 신설
 - 현행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됨
- 기업이 스스로 유연한 근로시간과 양질의 일자리를 설계하고 여성 일자리와 매칭
 - 기업은 유연한 근로시간과 여성의 직무역량에 맞는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확대 및 법률안 개정

-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 무화하는 것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의의를 가짐
 - 사용자가 고용형태, 직종, 직급, 직무별로 성별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
-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남녀평등 촉진을 위 한 제도적 보완조치, 성평등 임금 조성을 위한 조치, 향후 개선계획 등을 담도록 함
 -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유를 밝히고,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점검 진단과 평가를 통해 장기계획을 수립 조정해 나가도록 함
 - 향후 대상을 정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까지 확대해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
-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
 - 이수진·정춘숙 의원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성별 평균임금을 공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 으나, 성별에 따른 직종·직급·직무별 평균임금을 공시하여 상세한 임금정보를 제공할 필요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 6의 일부 개정

현행법	개정안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 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6(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① ----- -----고용형태 및 성별 에 따른 고용현황(직종·직급·직무 별 평균임금을 포함 한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법률안 개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는 인증마크 부여, 정책자금 우선지 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이행강제 금 부과, 조달권 박탈) 도입 필요
 - 중소기업로 사업장으로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고, 단기적으로 300인 이상 기업, 장기적으로 100인에서 2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 여 여성고용률 제고와 고용 차별 철폐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
 -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 하도록 유도하여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

-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현재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고, 향후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 고용률을 제고할 필요
 -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에 그친 임금조사를 직종별·직급별 임금으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의 일부 개정

현행법	개정안
제17조의3(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의수립·제출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제17조의3(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의수립·제출 등) 2. ----- 규모 이상(300인)의 ----- ② ----- -----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

참고문헌

- 김재호. (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월간 노동리뷰 1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지연. (2024).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13권, 한국개발연구원.
- 남국현. (2024). 중장년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민주연구원.
- 남국현. (2024). 청년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민주연구원.
- 노법래. (2020). 기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인과적 방향성 검토를 위한 종단 경로모형과 교차지연 패널모형의 결합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1호, pp.178-205.
- 윤미 외. (2022). 중장년층의 재취업경험과 정책인식에 관한 연구, 제26권 제3호, pp.281-305.
- 윤미 외. (2022). 중장년층 재취업활성화 정책방안: FGI기반의 AHP분석, 제26권 제1호, pp.297-320.
- 윤수경. (2019).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생애과정 관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1호, pp.200-229.
- 이양호 외.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2호, p.25-44.
- 이지현 외. (2023). 행복과 부패 특성에 관한 연구: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시장경제연구, 제52집 제3호, pp.41-68.
- 임재영 외. (2016). 불평등과 행복: Sen의 역량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 행정논총, 제54권 제3호, pp.175-198.
- 한요셉. (2024).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황광훈 외. (2023). 청년 노동시장 동향 및 일자리 미스매치, 고용동향브리프 5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2023년도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훈련참여 대상기관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 (2019).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 고용노동부. (2023).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 고용노동부. (2024).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3.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 관계부처합동. (2024.1.16).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 통계청. (2024.). 2024년 8월 고용동향.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2023). 2023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중장년층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